

의안번호	2200110
의 퇴 인	강경숙 의원
회 답 일	2024.06.26.
추 계 번호	24C0403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각 학교에 1명씩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9,500만원, 2029년 4,935.8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조 9,155억원(연평균 3,831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 종합계획 (안 제5조)	89	-	-	-	-	89	17.8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의 설치 (안 제6조)	6.4	6.4	6.4	6.4	6.4	32	6.4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배치 (안 제9조)	-	489,473	457,222	475,068	493,572	1,915,335	383,067
합 계	95.4	489,479	457,228	475,074	493,578	1,915,456	383,091

- 주: 1)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 종합계획과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주관한 종합계획과 위원회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3) 2026년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이 초·중·고교(국공립 총 10,314개교, 사립 1,784개교)에 각 1명씩 배치될 경우를 전제로, 국공립학교의 경우 인건비·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를 산출하였고 사립학교는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을 산출하였으며, 실제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의 배치계획 및 자격, 순회근무 형태 배치 비율 등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조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결과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3	안 제6조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1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관련 제도 개선 4.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5.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무규정
		(제2항)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량규정
		(제3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4	안 제7조 (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진단검사)	(제1항)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견·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5	안 제8조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제1항)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검사 결과,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 및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항)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위기 요인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히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 문제 행동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선정 및 지원)	(제5항)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항) 학교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항)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8항)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포함해 다음 각 호의 조직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활지도 및 위기학생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2. 학생 상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3.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협의회 4.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9항)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선정 및 지원, 보조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6	안 제9조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제1항)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으로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각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서는 순회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항) 그 밖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의 자격 및 운영, 배치,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7	안 제10조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	(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제도 연구, 정서행동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상담·교육·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위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량규정
		(제3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항) 그 밖에 정서행동위기학생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8	안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동 조는 선언적 성격의 조항으로 제정안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 재정소요가 발생하므로 관련 재정소요는 해당 조항에서 검토함
2	안 제5조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	
3	안 제6조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 회의 설치 등)	○	
4	안 제7조 (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진단 검사)	×	· 제정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견·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행 「학교보건법」은 정신건강 상태검사인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검사는 제정안의 검사와 실시 주체(학교의 장)와 검사 목적에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의 검사와 현행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동일한 검사로 설정하고 대상 학년만을 확대하는 등 기존 검사를 수정하여 활용할 것 ¹⁾ 인지 또는 제정안의 검사를 신규로 개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관련 추계가 곤란함
5	안 제8조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 및 지원)	×	· 제정안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²⁾³⁾ · 다만, 보조인력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곤란함
6	안 제9조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	
7	안 제10조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 센터)	×	·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제도 연구 등을 위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할 경우 재정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교육부는 2024년 현재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기관(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을 3년 주기 공모를 통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음⁴⁾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인원 및 예산(2024년) －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등 총 10명 － 예산 : 1,054백만원(국고) · 또한, 초중등학생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학교에 Wee클래스를 운영중이며,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도 학생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제정안의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관련 소요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동 센터를 현행 관련 조직들과 별도로 설치·운영할지 여부 및 인원·예산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나,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곤란함
8	안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	· 제정안은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탁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현시점에서 구체적 비용에 대한 추계가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①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②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6조), ③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안 제9조)에 소

- 1)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른 ‘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진단검사’는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제정안의 검사의 경우 정서행동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특정학년이 아닌 전학년에 걸쳐 실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도구의 개발 등이 추가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2) 학교의 장이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하여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제4항), 보호자 및 교직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제5항)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학교의 인력 또는 안 제9조에 따라 신설되는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등과 기존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에서 제외하였음
- 3) 학교의 장이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하여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교생활 및 학습지원을 실시하도록(안 제8조제6항)하는 것은 안 제9조의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과 기존 보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하였음
- 4) 이외에도 관련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연구소 등, 예산 48,786백만원)가 운영되고 있음

요되는 비용을 추계

-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⁵⁾되며, 본 추계서에서는 교육부에서 수립·시행한 ‘종합계획’ 사례를 준용하여 관련 비용을 산출함
 - －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 제2조의3에 따라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⁶⁾하고 있으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방안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동 계획들은 기존 인력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별도의 연구용역 비용 등을 수반하지 않음
 - － 다만, 제정안의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종합계획’의 경우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청과의 협의 후 수립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추계서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시점에서 구체적 예상은 어려우나, 본 추계서에서는 교육부장관 소속인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
- 제정안은 각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⁷⁾하도록 하여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제정안은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의 자격 및 운영, 배치, 연수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제도 운영에 대한 예상이 어려우나, 본 추계서에서는 추계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따른 초·중·고교 1개교당 1명의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⁸⁾

5) 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은 교육청 내 인력과 재원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에서 제외

6)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7) 전문성함양을 위한 연수의 경우 프로그램을 신규개발, 관련 강사섭외 등을 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수방법(온·오프라인, 집합식 교육여부 등), 신규프로그램 개발 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

8) 제정안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서는 순회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으나,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본 추계서에서는 각 학교당 1명의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순회근무 형태로 교사가 배치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감소할 수 있음.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2023.4.기준 12,100개교에 4,776명(배치율 39.5%)이 배치되어 있으나, 학교 외 위센터 등에 전문상담교사 82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학교내외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사’도 2,419명(학교)과 706명(위센터 등)이 있음. 이에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순회교사로의 배치가능성과 교원이 아닌 인력이 배치될 가능성 등도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안 제9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대로 각 학교에 교원인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

-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의 자격 및 채용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2025년)을 감안하여 2026년에 일괄 배치되는 것으로 가정
-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의 추가 배치에 따른 비용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나누어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를 추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국가부담금 비용만을 추계⁹⁾
- 인건비에는 봉급¹⁰⁾과 수당¹¹⁾, 기관부담금¹²⁾을 포함하여 산출하고, 기본경비는 인건비에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른 인건비 대비 물건비¹³⁾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자산취득비는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신규 배치하는 2026년에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산취득비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국가부담금 비용은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의 보수에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¹⁴⁾

□ 개정안의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점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9) 시·도교육청은 인건비 및 운영비 수입(기준재정수입)이 지출(기준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사립학교에 그 부족액만큼을 보조(재정결함보조)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에 교원인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이 배치되는 경우 인건비 지출의 확대에 재정결함보조액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도교육청별로 재정결함보조의 세부 기준 등이 다르고 그 보조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학교별 세입·세출 상황 또한 모두 알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에 배치되는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비용만을 추계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며, 본 추계서에서 합산하지 않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증가분까지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액보다 증가할 수 있음
- 10) 자격에 대한 구체적 예상이 어려워 전문상담교사(2급)의 기산호봉인 8호봉으로 가정(「교육공무원 호봉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전문」)
- 11) 수당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교직수당, 정액급식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 하였으며, 전문분야에 해당하여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수당’은 전문상담교원에 준용하여 같은 금액으로 계산하였고, 그 밖에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등),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등), 연가보상비 등 다른 수당은 고려하지 않음
- 12) 기관부담금은 봉급 및 수당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공무원연금) 비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13)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물건비에는 운영비(일반수용비·공공요금·특근매식비 등),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됨
- 14) 사학연금의 국가부담금 비율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706%를 적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개인부담금)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종합계획) 5년마다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은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교육부에서 수립·시행한 ‘종합계획’ 사례를 준용하여 관련 비용을 산출함
 - 교육부는 2022년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3~27)년 수립을 위하여 약 8,9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였음
 - 본 추계에서는 동 사례를 준용하되 예산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하여 향후 5년간 총 8,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를 예상¹⁵⁾

[표 2]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종합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종합계획(안 제5조)	89	-	-	-	-	89	17.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본 추계서에서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초학력보장위원회’와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 ‘기초학력보장위원회’와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모두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¹⁶⁾¹⁷⁾
 - 이에 제정안의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가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15)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매5년마다 국민을 위한 인권의 법적 보호강화와 제도적 실천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비로 2022년 5,750만 원을 집행하였음.

16)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기초학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이하 생략)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되는 것으로 하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참조하여 위원 중 8인을 민간위원으로 가정하고, 연간 분기별 1회씩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민간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한 1인 1회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연간 추가재정소요) 8인×20만원×4회 = 640만원

[표 3]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 (안 제24조)	6.4	6.4	6.4	6.4	6.4	32	6.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학교 별로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초·중·고교에 각 1인씩 배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국·공립학교) 국·공립 초·중·고교 1개 학교에 각 1명의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배치할 경우 총 소요인원은 10,314명임¹⁸⁾
 - 봉급, 수당 및 기관부담금을 포함한 인건비와 인건비에 기본경비 비율 6.54%를 곱하여 계산한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합산한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1명당 배치 단가를 배치인원 수에 적용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
 - 채용절차 등 준비기간(2025년)을 거쳐 2026년에 배치될 교원에 대한 소요비용은 2026년 4,864억원 2029년 4,904억원 등 총 1조 9,031억원으로 추계됨
 - 다만, 이는 국·공립 초·중·고교 1개 학교에 각 1명의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배치기준 및 자격과 순환근무 형태의 배치 비율 등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표 4] 국·공립학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배치 단가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호봉)		-	(8호봉)	(9호봉)	(10호봉)	(11호봉)	-	-
인건비 (A)	봉급·수당(a)	-	35	36	38	39	149	30
	기관부담금(b)	-	5	5	5	5	20	4
	소계(A=a+b)	-	40	41	43	45	168	34

18) 2023 교육통계의 학교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수를 제외한 숫자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기본경비(B=A×6.54%)	—	3	3	3	3	11	2
자산취득비(C)	—	5	—	—	—	5	1
단가 계(A+B+C)	—	2,069	2,071	2,074	2,077	8,291	37

주: 전문상담교사의 기산호봉과 동일하게 8호봉의 교원이 신규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기관부담금 비율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이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5] 국·공립학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배치 비용 추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배치 인원(A)	—	10,314	10,314	10,314	10,314	—	10,314
단가(B)	—	47	44	46	48	185	37
국·공립학교 배치(A×B)	—	486,355	454,310	472,042	490,428	1,903,135	380,627

주: 국·공립 초·중·고교 1개 학교에 각 1명의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배치기준 및 자격과 순환근무 형태의 배치 비율 등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사립학교) 사립 초·중·고교 1개 학교에 각 1명의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배치할 경우 총 소요인원은 1,784명임
 - 인건비는 봉급, 수당은 국·공립학교의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며, 이에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비율인 3.706%를 적용하여 재정소요를 산출함

[표 6] 사립학교 정서행정지원전문교원 추가 배치 비용 추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배치 인원(A)	—	1,784	1,784	1,784	1,784	—	1,784
보수 단가(B)	—	47	44	46	48	185	37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비율(C)	3.706%	3.706%	3.706%	3.706%	3.706%	3.706%	3.706%
사립학교 배치(A×B×C)	—	3,118	2,912	3,026	3,144	12,200	2,440

주: 사립 초·중·고교 1개 학교에 각 1명의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이들에 대한 사학연금 국가부담분을 계산한 값이며, 실제 배치기준 및 자격과 순환근무 형태의 배치 비율 등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7]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추가 배치 비용 합계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국·공립학교 배치 비용	—	4,864	4,543	4,720	4,904	19,031	3,806
사립학교 배치 비용	—	31	29	30	31	122	24
추가 배치 비용 합계	—	4,895	4,572	4,751	4,936	19,153	3,8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은 배치계획 및 자격요건, 순회근무 형태 배치 비율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
-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